

행정기관명

수신
(경유)

제목 공매 통지서

「지방세징수법」 제8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매할 것임을 통지합니다.

체납자	성명 (법인명)	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	주소 (영업소)				
공매재산의 표시					
공매공고일		년 월 일			
공매 장소		공매 방법	[] 일반경쟁입찰(기일입찰, 기간입찰) [] 경매		
배분요구의 종기일					
회 차	입찰일시(기간)		매각결정 기일	매각예정가격	
	입찰기간(입찰일)	개찰일			
수익계약		제1회 공매 후 1년 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.			
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	1. 공매공고의 등기(등록)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한 채권자 및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자는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합니다(「지방세징수법」 제81조제1항 및 제2항). 2.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때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(「지방세징수법」 제81조제3항). 3. 공매공고의 등기(등록) 전까지 등기(등록)된 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집행 기록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하며,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(「지방세징수법」 제81조제5항).				
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(단위: 원)					
세 목	과세연도	납부기한	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		
			계	지방세	가산금
체납처분비					
합계					

- 매각결정 전에 체납자 또는 제 3 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85조에 따라 공매를 중지합니다.
- 이 통지서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81조제4항의 채권신고 최고 및 같은 조 제6항의 배분요구 안내, 「지방세징수법」 제7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익계약에 의한 매각가능성 통지를 포함합니다. 끝.

발 신 명 외 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시행일)

접수

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접수일)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 구분